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35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5. 체결된 합의해제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9. 11. 12. 접수 제14289호로 말소등기 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6. 3. 29. 접수 제504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090873호 판결금 채권). C은 피고(모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9. 11. 5.자 합의해제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이는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5. 체결된 합의해제 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성만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과 같이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